

충청북도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(안)

충청북도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항중 "보사환경국장", "사회과장" 을 각각 "사회복지국장",
"사회복지과장" 으로 한다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.